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 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견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1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홍 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견

검 토 보 고 서

1996 . 1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견

검 토 보 고

이 의견청취는 1996년 1월 18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 낙후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93%가 구획정리사업을 원하고 있어
-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에 앞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시 설 명 :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면 적 : 494,010m² (149, 437평)
- 사 업 비 : 26,690백만원
- 인구수용 : 14,400명 (3,600호)
- 시행기간 : '96. 11 ~ '99. 12 (3년간)
- 시 행 자 : 대전광역시장

3. 검토 의견

- 금번 도시계획 결정코자 하는 복수지구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우기시 유등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며, 상수도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는등 생활의 불편으로 그동안 당해 주민들로 부터

수차에 걸쳐 구획정리사업을 조기사행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시에도 지

역주민의 93% 이상이 구획정리사업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의 추진은 늦은감이 있으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지역으로 판단이 됨.

- 지구내 현황을 보고드리면, 230호의 노후가구와 70% 정도가 전답인 경작지로서 가축축사와 소규모 가내공장 및 레미콘공장이 소재해 있음.

- 의견청취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때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가 되며, 지형여건상 완벽한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지

역인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부채지주자가 대부분인 소수의 반대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